

	구성원참여및소통에관한규정	규정번호	3-1-8
		제정일자	2018.09.0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원”이라 함은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총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범위)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 운영상의 주요 의사 결정시에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 및 특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학습권 확보 및 학점 취득, 학위 취득 등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급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제시된 사항 외에도 대학운영 관련 주요 정책이나 제도 도입,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대학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 위원회
2. 의견수렴 간담회
3. 교직원제안제도
4. 만족도 및 수요조사
5. 월요포럼
6. 학생계시판
7. 교직원연수
8. 기타 구성원 간의 참여 및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절차) ① 각 행정부서 단위별로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활동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시행계획 수립
2. 참여 소통 활동 진행
3. 결과보고 및 관련 위원회 협의
4. 결과의 활용

②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시행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기안문에 해당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명기한다.

③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활동을 통해 시행된 주요 사업의 시행 성과에 대하여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 또는 공지 활동을 한다.

제7조(기타) ①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